

환경관리

실무상담

(마지막회)



차승환

〈환경청 폐기물관리국〉

25. 배출시설 관리인

환경보전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자는 배출시설관리인을 임명하고 이를 환경청장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 특히 같은 조 제2항의 후단에 사업자는 배출시설관리인이 그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정상가동을 위하여 필요한 요청을 하는 때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만약 사업주가 이를 거부하였을 경우

에는 6월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제68조 제2호)

이는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환경오염물질 관리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있는 관리인이 오염물질을 적정 관리하기 위하여 사업주에게 필요한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주는 이를 이행토록 책무를 부여한 것인 바, 배출시설 관리인은 항상 관리 내용을 점검하고 준수사항을 이행토록 하여야 할 것이다.

가. 사업장 작업시간 판정기준

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별표 12”(주)3호에 의하면 1종 및 2종 사업장 중 1일 평균 17시간이상 작업하는 경우에는 관리인을 2인이상 두도록 되어 있는 바, 이때 작업시간이란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가동시간을 말하는데 배출시설 가동시간과 방지시설 가동시간이 다를 경우에는 가동시간이 긴쪽을 기준으로 하여 작업시간을 판정하여야 한다. 이것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배출시설 관리인의 임무는 방지시설의 정상가동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유지관리, 시설의 개선여부판단, 운영일지 작성 등을 하여야 함으로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의 어느 한 쪽이 가동되고 있을 경우에는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나. 1·2종 사업자의 관리인 자격 선임기준

1일 평균 17시간이상 작업하는 환경보전법시행 규칙 “별표12” (주)제3호에 해당되는 1·2종 공통사업장(대기 및 수질배출시설이 설치된 사업장)으로서 환경기사 1급의 해당분야 기술자격을 복수 소지한자 2인을 두고 있을 경우라 하더라도 배출시설관리인을 추가로 선임하여야 한다. 1일 17시간 이상 작업하는 1·2종 사업장의 배출시설 관리인은 환경기사 1급이상의 분야별 기술자격 소지자 각 2인 이상을 두거나 1급이상 자격소지자 각 1인과 2급이상 자격소지자 각 1인이나 또는 2급이상 자격을 복수로 소지한 자 1인(3종 사업장의 관리인 자격기준)을 선임하도록 되어 있다.

26. 산업폐기물 운반신고 주체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자, 처리업자 등이 산업폐기물을 처리하고자 할 경우 운반신고와 매립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다. 이때 운반신고를 하여야 할 주체는 “폐기물을 처리하고자 하는 자”로 되어 있는 바 운반주체가 운반신고를 하여야 한다.

사업자가 배출되는 산업폐기물을 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할 경우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사업자(공장)의 차량으로 처리업자의 처리장까지 운반할 경우에는 사업자가 운반신고를 하여야 하며, 처리업자가 사업자의 사업장(공장)에서 운반할 경우에는 처리업자가 운반신고를 하여야 한다. 재생이용업자가 배출되는 산업폐기물을 재이용할 경우에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운반신고를 하여야 한다.

운반신고 서식은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지 제23호의 서식으로 하게되어 있는데, 특정산업폐기물(특정유해, 폐유, 폐합성수지, 폐산, 폐알카리)을 운반하는 경우에는 운반일 하루전까지, 일반산업 폐기물(유기물류 산업폐기물, 무기물류 산업폐기물)을 운반하는 경우에는 매월 말일까지 전달의 운반실적 및 다음달의 운반계획을 산업폐기물 발생지와 운반예정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구, 시, 군으로 권한위임 된 경우에는 구, 시, 군수)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

이때 일반산업폐기물의 경우 운반계획 신고서와 운반실적이 다를 경우에는 다음달의 운반신고 시에 사실상의 운반신고량으로 하여야 한다.

27. 특정산업폐기물의 매립신고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하면 특정산업폐기물을 매립코자 할 경우에는 동법 시행규칙 제24호의 서식에 의거 매립일 하루전까지 매립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으며, 매립신고를 받은 시·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산업폐기물의 시험성적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이때 시험성적서는 보건연구소 등 공공기관 발행

시험성적서나 자체 실험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자체시험성적서로 가능하다. 산업폐기물처리업자의 경우 관할 환경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을시 실험에 필요한 기술인력과 실험시설기준요건에 합당한 것으로 판정을 받았다.

한편 특정산업폐기물의 보관방법, 수집운반시의 기준, 최종처리처분 기준은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제5항에 규정되어 있는 바 이 기준에 합당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28. 산업폐기물 자가매립지 확보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산업폐기물의 처리비용이 전체 환경처리비용의 40%를 점유하는 경우가 있어 기업에 커다란 부담의 하나가 되고 있다. 대형 배출업소에서는 산업폐기물 위탁처리비용과 자가매립지 확보 방안을 비교하여, 자가매립지 확보가 기술상으로나 경제적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판정될 시에는 자가매립지를 확보함이 바람직하며, 산업폐기물의 종류와 성상이 비슷한 같은 업종의업체끼리 공동으로 매립지를 확보하면 더욱 경제적 이점이 있다.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면 산업폐기물 자가매립시설의 규모를 매립가능면적 $1,650\text{m}^2$ (500평) 또는 매립가능량 $5,000\text{m}^3$ 이상인 시설로 되어 있으며 자체 사업장 부지내에 설치할 시 매립장에서 배출되는 침출수(leachate)를 기존의 폐수처리장에 유입시켜 처리함으로서 침출수 처리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사업장에서 자체 산업폐기물 매립지를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체에서는 동법 시행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설치승인신청서(제25호 서식) 2부를 작성하여, 매립시설 설치 예정지역을 관할하는 환경지청장에게 제출하여 설치승인을 받아 처리시설을 설계서대로 설치완료한 후 다시 사용신고를 한 후 사용하여야 하며, 매립시설의 설치승인신청서 작성방법에 대하여는 환경청의 고시('87-18호, '87.8.13)를 참고하여 작성하면 된다. ◀